

##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(안)

의안 번호	16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 이유

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폐지 두 기관에서 담당하던 기능과 도내 현안국책사업 및 도특수시책 사업을 담당할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신설코자함

### □ 주요 골자

#### ○ 주요업무

- 국책사업관련 도추진사업
  -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, 경부고속전철오송역설치 복합화물터미널건설
- 도특수시책사업
  - 월드컵종합타운건설, 호남고속전철오송역설치
-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수립추진
- 택지개발사업
- 산업단지조성사업등

### 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제10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제40조제3항

### □ 따로 붙임

1.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(안) 1부.
2. 참고 자료(근거 법령 내용) 1부 끝.

##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 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에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"충청북도개발사업소" 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위치) 사업소는 충청북도청내에 둔다

제3조 (업무)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

1.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수립추진
2. 오송역 (경부호남고속전철) 설치
3.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
4. 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
5. 월드컵종합타운건설
6. 택지개발사업
7. 산업단지조성사업
8.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
9.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
제4조 (소장)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

②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

제5조 (공무원)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- ② (폐지조례)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 폐지하며,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(조례1793호 1989. 7. 28)와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(조례제2016호 93. 2. 19)는 이를 폐지한다
- ③ (경과조치)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조례에 의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,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업무와 시설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가 이를 승계한다

## 참고 자료 (근거법령내용)

### □ 지방자치법제105조

-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

#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제40조제3항

- 동시행령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
  2. 광역시·도 및 그 관할구역내의 시·군·자치구에 있어서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